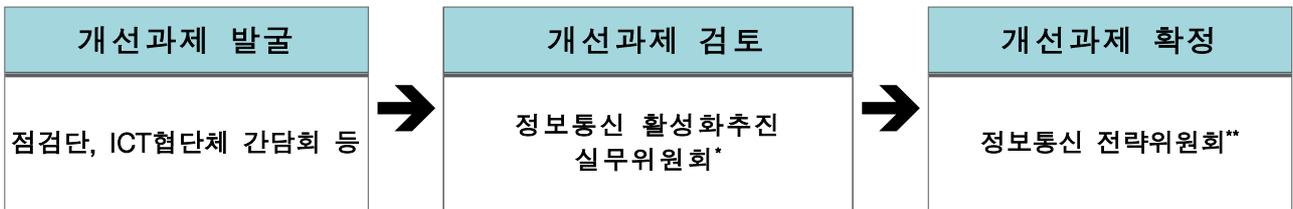


□ 업무 개요

- 미래부는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(14.2월 시행, 이하 “ICT특별법”)에 근거, ICT 전반 법·제도 규제개선을 추진

※ 미래부 소관사항 및 ICT와 관련된 쏘부처 영역 포함

□ 제도 개선 처리절차



* 위원장(미래부 2차관), 정부위원 실장급(6인), 민간위원(21인) (ICT특별법 시행령 제7조)

** 국무총리(위원장), 정보통신관련 장관급(11인), 민간위원(13명) (ICT특별법 시행령 제4조)

- (개선과제 발굴) 규제개선 국민점검단(120명), ICT협단체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ICT 분야 법·제도 개선사항 발굴
- (개선과제 검토) 실무위원회는 발굴 과제를 ‘개선 필요성 및 對국민 파급효과’에 따라 검토, 개선과제*에 한해 전략위 상정

* 개선 필요성 및 對국민 파급효과가 모두 큰 과제

- (개선과제 확정) 전략위원회는 개선필요성 및 對국민 파급효과가 클 경우 소관부처에 개선사항 이행 요구(ICT특별법 제10조제3항)
 -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하여야 함
 - 제1차~제4차 전략위원회에서 총 59건의 과제를 의결(2015.10월 기준)

제7조(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"전략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,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.

1.~5. (생략)

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본계획의 확정

2.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, 점검 및 평가

3.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

4.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

5.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

6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

7.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(이하 "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"라 한다) 등을 둔다.

⑤, ⑥ (생략)

제10조(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무 등)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.

1.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·제도 개선

2.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·제도 개선

3.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·제도 개선

4.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

5.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·제도 개선

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·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□ 총 59건의 법·제도 개선 과제 심의·의결

| 구분 | 추진 과제 |
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회 전략위원회</p> | 1. 위성UHD 기술기준 마련 |
| | 2. 전기통신사업자 통계보고 체계 정비 |
| | 3. 미신고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제도개선 |
| | 4. 실제 매출액기준 주피수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 합리화 |
| | 5. 통신기기 적합성 평가대상 변경신고 범위 확대 |
| | 6.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광고물 활용 기반 조성 |
| | 7.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|
| | 8. 외국인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전면허용 |
| | 9. 비표본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|
| | 10.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 |
| | 11.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채널사업 직접 양도·양수 허용 |
| | 12. 무선기지구 표본검사 대상 확대 |
| | 13. 대표번호(1588 등) 부여 제한 완화 |
| | 14. 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폐지 |
| | 15.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재분류 |
| | 16.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|
| | 17.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절차 간소화 |
| | 18.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|
| | 19.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 일자 부여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회 전략위원회</p> | 1. IT융합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|
| | 2. 벤처·창업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|
| | 3. R&D 참여기업 중 중소·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|
| | 4.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‘개발기관 소유’ 원칙 도입 |
| | 5.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|
| | 6. ‘원클릭’ 결제서비스 활성화 저해 관행 개선 |
| | 7. 스마트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|
| | 8. 유심(USIM)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|
| | 9. 상용SW 분리발주제도 실효성 강화 |
| | 10.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|
| | 11.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|
| | 12. 쇼핑물 이용자에 대한 외국과 다른 개인정보 요구·보존 의무 철폐 |
| | 13. 다단계 판매에서 청약철회의 전자화 |
| | 14. 이용자 중심의 결제정보 수집·제공 방식 구현 |
| | 15. 스마트TV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|
| | 16. 건축사무소 현장조사 결과보고의 전자화 |
| | 17. 부동산 거래계약서 전자문서 인정근거 마련 |

| 구분 | 추진 과제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회 전략위원회</p> | 1. 통신업종 온실가스 감축률 부담 완화 |
| | 2.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명확화 |
| | 3. 기간통신사업의 휴·폐지 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|
| | 4.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진입시 중복승인 신고 폐지 |
| | 5.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제출 서류 간소화 |
| | 6.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요건 완화 |
| | 7.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및 발급 신청 수수료 폐지 |
| | 8. 전송망사업자의 전송·선로설비 이용약관 신고제도 폐지 |
| | 9. 국방SW 국산화비율 향상을 위해 평가항목 반영 등 선정기준 개선 |
| | 10. 위해도 낮은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 |
| | 11. ICT R&D 참여 중소기업의 현금부담금 면제 |
| | 12. ICT R&D 성과물 실시권 활용대상 확대 |
| | 13. 데이터센터 정의·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|
| | 14. 「전파법」상 거짓·음란 통신 벌칙규정 폐지 |
| | 15. 전통주 인터넷 판매사업자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|
| | 16.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폐지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회 전략위원회</p> | 1.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법·제도 마련 |
| | 2.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개선 |
| | 3. T-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|
| | 4.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승인 제도 개선 |
| | 5. 주파수용도 미지정 대역(프리밴드)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|
| | 6.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|
| | 7.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|